

의안번호	제 9 호	의 결 사 항
의결연월일	1999. . .	

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

발 의 자	최정경 의원의 4인
발의연월일	1999. 3. 2.

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1999. 3. 2.

발의자 : 최정경 의원의 4인

1. 제안이유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명 변경으로 본 규정을 개정함.

2. 주요골자

○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음.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의회 훈령 제 호

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

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